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12
------------	-------

제출년월일 : 2013.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용어로 정비(안 제3조)

나. 위원회 구성 조정(안 제4조)

1) 위원장 :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2) 위촉 위원의 수 :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

3)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4) 위촉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 연임 1회로 제한

5) 위원 위촉 시 승낙서 및 서약서 징구 및 위촉장 서식 규정

다.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안 제8조)

라. 위원의 해촉 규정(안 제9조)

마. 회의 자료의 요구 및 설명 등 규정(안 제12조)

- 이해관계인의 설명 및 의견청취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바. 회의록 공개 시점을 심의 종결 후 30일(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공개 규정(안 제14조제2항)

사. 운영세칙(안 제15조)

-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

아.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
(안 전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12. 12. 20 ~2013. 01. 09)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관련 조문	평가기준	검토 결과	조치 결과
제4조(구성)	<input type="radio"/> 위원 구성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위촉위원의 전문성 제고 - 연임 위촉 제한	원안동의	
제8조(위원회 제척 · 회피 · 기피)	<input type="radio"/> 이해충돌 가능성 -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마련되지 않은 기피규정 신설	반영
제12조(자료 제출의 요구 및 설명 등)	<input type="radio"/> 행정절차의 투명성(접근성)	행정절차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의견청취 기능 명시	반영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제4조(구성)	<input type="radio"/> 위원 구성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위원 청렴성 검증 강화	서약서에 일반적 청렴 규정과 위원의 제척, 회피, 해촉 등 규정 추가	반영
제14조(회의록)	<input type="radio"/> 위원회 운영과정의 공개 강화 (도시계획 회의록 공개 강화)	원안동의	

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2013. 1. 31)

마.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2. 구청장이 입안 또는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구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 구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 · 건축 · 주택 · 교통 · 환경 · 방재 · 문화 · 정보통신 · 도시설계 · 경관 · 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해당사자로부터 기피신청을 받을 수 있다.
- ④ 제1항 각 호 및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참석저조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위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위원이 서약서의 내용에 반하여 회의 내용 등을 누설하는 때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

-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제출의 요구 및 설명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개정 전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전 조례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제4조제4항의 본문 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됨에 있어 심의위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나는 위원 위촉시 위원회 심의에 성실히 참여한다.
- 나는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이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나는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인지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지 않는다.
- 나는 심의와 관련된 신청자 또는 제안자와 개별접촉을 하지 아니하며, 불가피하게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 회의시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안건을 회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나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제척·회피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에게 부여된 회피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나는 이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해촉되는 것은 물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의 다른 위원회 참여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아들일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위원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귀하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
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임기 :)

년 월 일

마포구청장 ○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황경순
연락처	02-3153-9353